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8호		
의안명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	제출연월일	2019.04.15.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언남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은 2006.12.01 개관이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언남문화체육센터
- 소재지 : 서초구 동산로 13길 35

○ 연면적 : 연면적 14,325.03㎡(4,333평), 지하2층/지상7층
 ※ 위탁 체육시설(면적 : 11,538㎡)

○ 개 관 일 : 2006. 12. 01

○ 현 위탁기간 : 2016. 10. 20 ~ 2019. 10. 19

○ 현 수탁법인 : (사)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

▶ 개관 이후 3년 마다 재위탁(4회)

○ 이용요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별표2 범위 안에서 결정

○ 체육시설현황

구 분	용 도	면적(㎡)	운영주체
지하 1층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학교 4레인 : 평일 13:30~16:30 주 민 : 학교 사용시간외 사용)	2,202.14	구 청
지하중층	헬스장, 에어로빅실, 주민강습실	1,537.94	구 청
지하주차장	지하1·중층 : 191면 (학교 : 학기중 51, 방학중 25)	5,220.00	구 청
지상 1층	어린이집	601.67	구 청
지상 2층	학교급식식당	958.75	학 교
지상 3층	정보도서관	932.30	학 교
지상 4층	골프연습장	741.93	구 청
지상 5층	컴퓨터실, 어학실	578.85	구 청
	컴퓨터실	163.08	학 교
지상 6층	컴퓨터실,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732.62	학 교
지상 7층	다목적실	609.72	구 청
	음악실(학교 : 학교 수업시간) (주민 : 학교 사용시간외 사용)	46.03	구 청

○ 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센터장	안내및접수	운영지원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
현 원	22	1	5	12	4(청소위탁6별도)

○ 시설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내역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2,091,038	1,991,892	1,997,884
운영비	620,396	521,105	570,582
관리비	356,589	376,021	410,010
인건비	1,114,053	1,094,766	1,017,292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 3년
- 위탁업무
 -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필요인력(강사 등) 확보
 -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법인) 선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조제3항

II. 검토 의견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언남문화체육센터’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은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민간위탁 주요 성과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임.
- 최근 3년간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도별 연간이용인원은 2016년 21,021명에서 2017년 21,216명으로 0.9% 증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여 최근 3년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 수입은 2016년에 21억6천만원, 2017년에 20억9천9백만원으로 2.8%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21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최근 3년간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지출은 2016년에 20억9천1백만원, 2017년에 19억9천2백만원으로 4.7%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19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여 최근 3년간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수익은 2016년에 6천9백만원, 2017년에 1억7백만원으로 55.1%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하여 최근 3년간 8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1> 최근 3년간 주요 성과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	2,159,906	2,098,731	2,126,226
지출	2,091,038	1,991,892	1,997,885
수익	68,867	106,839	128,340
연간이용인원 (명)	21,021	21,216	20,640

- 한편,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조건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언남문화체육 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의무적립금은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운영결산 결과 산출된 평균매출액(1,995,886천원)의 7%(139,712천원) 중 언남중·고등학교에서 사용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50,698,384원)를 제외한 89,013,616원을 매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탁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사료됨.

<표2> 의무적립금 납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월 현재
의무적립금	96,856,570	89,013,916	89,013,916	내년 결산후 2020년 납부

주) 2016년의 경우 종전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적립금이 포함되어 2017년/2018년 의무적립금 보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에 따라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운영의 위탁)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기준에 부합됨.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자의 선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함.
 -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으며,

- 위탁업무 내용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필요인력 확보,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설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3년간 운영성과에서 연간이용인원이 1.8%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절감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위탁의 목적인 시설의 활성화 측면을 감안할 때 이용자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위치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장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 또는 제3장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③ 별표1 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 ①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
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2.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 3.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전문개정 2012.03.08.]

제16조(운영지원)

-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2013.05.02.)
-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적·물적 현황
 -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5. 사건·사고 현황
 - 6. 성과평가 자료 등

언남문화체육센터 위치도

